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장기공실 해소를 위해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격 완화모집요건 등을 개선하고,

25㎡이하의 소형평형에 제공되는 빌트인 품목에 모든 계층에서 선호하는 세탁기 추가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인근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품목에 세탁기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활용도가 낮은 식탁·책상은 제외 (제34조의8)

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는 대상주택에 최초 계약율이 50% 미만인 경우 추가 (제93조의2, 제94조의3)

-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는 요건에 ‘평형별 공급호수’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 미임대중인 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중 ‘일반’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94조의2)
- 라. 특례에 따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6년(4년+2년)으로 설정 (제94조의4)
- 마.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인근(100m 이내)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별표4)
- 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기준 중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기간 완화 요건에 ‘자녀의 연령’ 사항 추가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전화 044-201-4513, 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